

2023년 서울특별시 사립 박물관·미술관 활성화 지원 사업 모집 공고

서울특별시 등록 사립박물관·미술관 대상, 학예인력 및 문화사업 지원을 위한 보조 사업을 추진합니다. 사립 박물관·미술관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23년 3월 7일

서울특별시시장

1. 지원근거

-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4조(경비보조 등)
-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제4조(경비지원)

2. 지원개요

[학예인력 지원]

- 지원대상 : 서울시 등록 사립 박물관·미술관 및 서울시 박물관·미술관 협의회
- 지원규모 : 기관당 월 190 ~ 220만원(연 최대 22백만원)
- 지원기간 : '23년 4월 ~ '24년 1월
- 지원내용 : 기관당 학예 또는 학예보조 인력 1인의 인건비 지원(최대10개월)

등급	지원금(월)	자부담금(월)	총금액
정학예사(정학예사 자격증 O)	220만원	30만원+a	250만원+a
준학예사(준학예사 자격증 O)	210만원	30만원+a	240만원+a
학예사 시험 합격자(자격증 X)	200만원	30만원+a	230만원+a
자격증 미소지자로서 박물관 미술관 관련 학과 졸업자	190만원	30만원+a	220만원+a

※ 4대 보험 가입 관련 비용은 기관 부담

- 지원배제 : 대기업 설립 기관, 기관 설립자 및 대표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자 제외

[문화사업 지원]

- 지원대상 : 서울시 등록 사립 박물관·미술관 및 서울시 박물관·미술관 협의회
- 사업기간 : '23년 4월 ~ 12월 ※ 사업시기는 지원관의 계획에 따름
- 지원내용 : 지역사회 거점 공동협력사업, 기획전시, 교육·체험 프로그램, 스마트 박물관·미술관 구축 등

사업 예시	세부 프로그램 예시	최 대 신청액	자부담률
지역사회거점 공동협력사업	- 박물관·미술관 공동협력사업 - 지역 학교 및 문화원 등 연계 협력사업 - 서울아트워크(9월초) 연계 협력사업 등	3천만원	▶개별기관 : 10% ▶공동협회: 5%
기획 전시	- 온·오프라인 기획전 * 상설 전시 제외		
교육·체험 프로그램	- 전시 관련 교육·체험 프로그램 - 시민 견학 및 탐방 프로그램 등		
스마트 뮤지엄 구축	- 소장품 DB 구축 - AR·VR 콘텐츠, 메타버스 뮤지엄 구축 등		

- 지원금액 : 기관당 최대 3천만원 이내
 - ※ 기관별 보조사업 규모에 따라 최고 한도 내에서 자율 신청하되, 보조사업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금이 결정되므로 적정 예산 규모 산출신청 주의
- 가점부여 : 장애아 친화 프로그램 추진시
- 지원배제 : 대기업 운영·출연 기관, 전년기준 휴관일 90일 이상 기관

3. 심사일정 및 방법

☐ 지원 신청서 접수

- 접수일시 : 2023.3.20(월)~22(수) 09:00~18:00
- 접수방법 : email 접수(cyan0803@seoul.go.kr)
 - ※ “접수확인” 답장을 받은 경우에만 접수인정
- 제출서류 : ① 지원신청서, ② 기관 기본현황, ③ 사업계획서
 - ※ 제출서류는 한글파일 1부, 단체직인 날인 스캔본 1부 제출
 - ※ 학예인력사업의 경우 추후 증빙서류(표준근로계약서, 4대보험가입내역서, 이력서 및 자격증 등) 제출 필수
- 문 의 : 서울시청 박물관과 박윤미 주무관 (02-2133-4192)

☐ 결과발표(예정) : 2023. 3.31(금) 서울시 홈페이지, 기관 협의회 홈페이지

4. 유의사항

- 기관당 인력·문화사업의 복수 지원 가능하나 인력사업의 경우 문체부 등 타 기관 중복 지원 불가
- 과거 지원사업과 동일한 사업, 영리 목적의 사업(공공성을 심히 훼손하는 사업 등) 및 상설 전시 등의 사업은 신청 불가
- 문화사업의 경우 최대 보조금 지원액 내에서 신청하되, 보조금 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액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적정 예산으로 신청 필수

5. 보조금 집행 관련 사항

- 선정기관은 '23년 문화사업 관련 정보를 고무지엄(서울박물관미술관 홈페이지) 업데이트 필수
- 전시 사업 중 제작한 도록 판매 가능
 - 단, 도록은 전시사업의 일환으로 부수적으로 제작되어야 함(보조금의 50%이내)
 - 보조사업으로 제작한 도록 판매 후 수익은 보조사업 종료시까지 보조사업에 재투자해야 하며, 사용하지 못한 수익은 다음연도까지 반환
- 보조금은 분기별 또는 사업 시기별 지급
- 보조금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(보탬e)을 활용하여야 하며, 업무협약을 체결한 은행의 보조금 결제카드(체크카드), 보조금 관리 전용통장을 보조금 사업별로 개설
- 보조금 통장은 자부담, 다른 보조금 사업의 사업비, 기타 경비와 혼용하여 사용불가
- 자부담 통장에 기관 의무비율에 따른 금액 확인 후 보조금 지급
- 중간 현장 실사 및 보조금 정산을 실시하여 보조금 지급 목적에 반하여 부적절하게 집행하거나, 지출 증빙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함
-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사업비를 환수한 기관에 대하여는 환수한 날로부터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

6. 기타사항

-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금을 반납해야 함
- 박물관·미술관 활성화 사업계획에 의해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은 사업 적정성 검토를 위한 자료 요구 시, 적극 협조하여야 함

붙임 : 지원신청서 양식